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91
----------	------

2021년 03월 0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양민규 의원(찬성자 12명)
- 나. 발의일자 : 2020년 12월 22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01월 21일
- 라. 상정결과 :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03월 02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양민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여성의 경우 매달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료 감면 사유에 여성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시립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서남권 돛구장 수영장의 경우 여성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조례상 감면대상에 제외되어 있는바, 이를 조례상 감면 대상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불비를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성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 감면대상에 서남권 돛구장을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2호라목)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기 타 :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욱)

가. 개정 동향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최근 2년간 의원발의 7건, 시장제출 3건으로 총 10차례 개정되었으며, 자원봉사자 및 차상위계층,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액,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확대,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다목적구장, 산악문화체험센터 등 신규시설 이용료 명기 및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현행화 등을 위한 것임.

나. 개정조례안 검토

- 동 조례안은 서남권돛구장 수영장의 사용료 부과시 여성할인제도(월경기간)도입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2호라목 사용료 감면대상에 서남권 돛구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시는 '08년 3월부터 시립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월경기간을 고려하여 월 사용료 100분의 10을 감면해 옴.

수영장 여성할인제도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월경으로 수영장 이용에 제한을 받아도 개인사정으로 치부해 할인이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2006년 20대 여성이 월경을 이유로 수영장 이용 기간 연장을 거절당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일을 계기로 시작된 것임.

고척돛구장은 '15년 11월 개장 이후 여성할인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16년 18백만원, '17~'19년 각 39백만원 등 감면혜택이 있어왔으나

조례 정비 미비로 감면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타당한 조치로 보임.

- 또한 안 부칙 제2조에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로 서남권 돛구장 수영장에 대한 개정규정을 2016년 6월 7일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이는 실질적으로 서남권돛구장 수영장의 여성할인제도 혜택이 발생한 때로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통상 신법을 소급적용한다는 취지의 적용례는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할 경우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함.

특히 형벌의 부과, 재산권의 박탈, 참정권의 제한, 조세의 부과

외에도 국민에게 불리한 조치에 대한 진정소급입법은 헌법 상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동 조례의 경우 명문화된 근거없이 발생한 여성할인제도에 대한 근거를 소급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민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91
----------	------

발 의 년 월 일 : 2020년 12월 22일
발 의 자 : 양민규 의원(1명)
찬 성 자 : 강동길,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김용연,
문영민, 이동현, 이석주,
이호대, 전병주, 최기찬 의
원(12명)

1. 제안이유

- 여성의 경우 매달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료 감면 사유에 여성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시립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서남권 돛구장 수영장의 경우 여성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조례상 감면대상에 제외되어 있는바, 이를 조례상 감면 대상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불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여성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 감면대상에 서남권 돛구장을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2호라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라목 중 “제1·2수영장 및 창동문화체육센터”를 “제1·2수영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및 서남권 돛구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호라목 중 서남권 돛구장 수영장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7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 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p> <p>가. ~ 다. (생 략)</p> <p>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잠실 <u>제1·2수영장 및 창동문화체육센터</u> 수영장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p> <p>마.·바. (생 략)</p> <p>3. ~ 5. (생 략)</p>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 <u>제1·2수영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및 서남권 돛구장</u> -----.</p> <p>마.·바. (현행과 같음)</p> <p>3. ~ 5. (현행과 같음)</p>